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02. 0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1. 01. 21. 이수옥, 이재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 01. 22.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557호).

2. 제안이유

위임 조례로써 상위 법령의 용어정의와 동일한 내용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무부과를 한 조항이 있어 이를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함(안 제6조).
-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함(안 제9조).
-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위원의 수당 등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제14조).

마. 그 밖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 제17조).

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신설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제7조, 제9조~제11조, 제50조제5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 . ~ 2021. . .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3조 제7조 및 안 제12조부터 안제17조는까지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
-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의 용어 정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이하“조례”)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를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함.
- 안 제6조는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무부과를 한 조항이 있어 이를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함.
- 안 제9조부터 안 제 10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위원회 개선 계획에 의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경우 해당 국·소장이 위원장으로 한 지침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에서 해당국 과장인 공원녹지과장으로 변경함.
- 안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안 제 1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신설함.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법령체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

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